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1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3년 4월 27일
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조치임에 따라,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업종과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가정용 적용 기준을 월  $17m^3$  까지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업종과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 $17m^3$ 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(안 제29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9조제4항 본문 중 “15세제공미터”를 “17세제공미터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안 별표 1의 자.의 구분내용란 자목 중 “고시원”을 “다중생활시설”로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9조(세대분할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<u>15세제</u> <u>급미터</u>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[별표 1] 급수업종 구분표(제2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업종별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구분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정용</td> <td>가. ~ 아. (생략) 자.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<u>고시원</u>(다만, 오피스텔 제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육탕용</td> <td>가. (생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용</td> <td>가. ~ 너. 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업종별	구분내용	가정용	가. ~ 아. (생략) 자.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<u>고시원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육탕용	가. (생략)	일반용	가. ~ 너. (생략)	<p>제29조(세대분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<u>15세제</u> <u>급미터</u>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. 단, <u>주거용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월 18세제급미터까지 가정용으로 적용한다.</u>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] 급수업종 구분표(제2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업종별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구분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정용</td> <td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<u>고시원</u>(다만, 오피스텔 제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육탕용</td> <td>가.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용</td> <td>가. ~ 너.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업종별	구분내용	가정용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<u>고시원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육탕용	가. (현행과 같음)	일반용	가. ~ 너. (현행과 같음)	<p>제29조(세대분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17세제급미터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- . &lt;단서 삭제&gt;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] 급수업종 구분표(제2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업종별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구분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정용</td> <td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<u>다중생활시설</u>(다만, 오피스텔 제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육탕용</td> <td>가.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용</td> <td>가. ~ 너.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업종별	구분내용	가정용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<u>다중생활시설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육탕용	가. (현행과 같음)	일반용	가. ~ 너. (현행과 같음)
업종별	구분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정용	가. ~ 아. (생략) 자.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<u>고시원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
육탕용	가.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용	가. ~ 너.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별	구분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정용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<u>고시원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
육탕용	가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용	가. ~ 너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별	구분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정용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<u>다중생활시설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
육탕용	가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용	가. ~ 너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4항 중 “15세제공미터”를 “17세제공미터”로 한다.

별표 1의 자.의 구분내용란 자목 중 “고시원”을 “다중생활시설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<p>제29조(세대분할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<u>15세제 곱미터</u>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.</p> <p>⑤ · ⑥ (생 략)</p>	<p>제29조(세대분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17세제 곱 미터</u>----- -----.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급수업종 구분표(제2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업종별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구 분 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정용</td> <td>가. ~ 아. (생 략) 자.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<u>고시원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욕탕용</td> <td>가. (생 략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용</td> <td>가. ~ 너. (생 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업종별	구 분 내 용	가정용	가. ~ 아. (생 략) 자.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<u>고시원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욕탕용	가. (생 략)	일반용	가. ~ 너. (생 략)	<p>[별표 1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급수업종 구분표(제2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업종별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구 분 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정용</td> <td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<u>다중생활시설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욕탕용</td> <td>가.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용</td> <td>가. ~ 너.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업종별	구 분 내 용	가정용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<u>다중생활시설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욕탕용	가. (현행과 같음)	일반용	가. ~ 너. (현행과 같음)
업종별	구 분 내 용																
가정용	가. ~ 아. (생 략) 자.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<u>고시원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															
욕탕용	가. (생 략)																
일반용	가. ~ 너. (생 략)																
업종별	구 분 내 용																
가정용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<u>다중생활시설</u> (다만, 오피스텔 제외)																
욕탕용	가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일반용	가. ~ 너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